

# 韓國技術檢定公團 발족

404個 種目 業務조정 착수

科學技術處 資格試驗 일괄관장

- .....○ 政府가 實施하고 있는 技能士 및 技術士의 資格시험을 ○.....
- .....○ 科學技術處가 일괄관장하고 各業體의 技能工 養成을 指導하게 ○.....
- .....○ 韓 國技術檢定公團이 發足되었다. ○.....
- .....○ 기능검정공단은 지금까지 工業振興廳 勞動廳등 36個機關에서 年間 約 ○.....
- .....○ 30萬名을 대상으로 實施해 오던 404個 種目的 各種 技術檢定을 한데 묶었으 ○.....
- .....○ 며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해서 實施되는 모든 시험의 출제 채점 관리를 擔當하므 ○.....
- .....○ 로 기술검정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
- .....○ 同 公團은 초대 이사장으로 李洛善씨(前商工長官)를 選任했으며 총무 ○.....
- .....○ 국 출제관리국 검정국으로 조직되고 서울에(대우빌딩 11층) 본부를 ○.....
- .....○ 두며 各地方에 道支部를 두게된다. 同 公團法은 총24조와 附則 ○.....
- .....○ 2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

## 韓國技術檢定公團法

第1條 (目的) 이 법은 韓國技術檢定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國家技術資格檢定(이하 “技術資格檢定”이라 한다)과 이에 關聯되는 業務를 行하게 함으로써 그 檢定業務의 效率化를 도모함과 아울러 技術人力 開發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法人)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3條 (設立登記) ①公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公團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條 (分事務所의 設置)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 分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5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業務 및 그 執行에 關한 事項
5.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理事會에 關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9. 公告에 關한 事項
10. 解散에 關한 事項

②公團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事業)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이 委託하는 技術資格檢定の 施行
2.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이 委託하는 技術資格檢定の 試驗問題의 作成 出題 및 管理
3. 技術資格 檢定制度와 技術資格檢定の 試驗問題 및 檢定方法의 研究·開發

4. 技術資格檢定業務에 관한 弘報 및 刊行物의 發刊

5. 技術資格檢定業務와 關聯되는 事項에 관한 國際協力

6. 技術資格檢定業務와 關聯되는 行事的 主管 또는 그 行事に의 參加

②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第1項 第2號의 技術資格檢定試驗問題의 作成 또는 出題를 당해 技術分野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에 게 委託할 수 있다.

第7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技術檢定公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8條 (任員) ①公團에 理事長 및 副理事長 各 1人을 포함한 11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理事長·副理事長 및 監事は 科學技術處長官이 任免한다.

③理事長 및 副理事長 이외의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任하되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理事長·副理事長 및 監事이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⑤理事長 및 副理事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⑥理事長 및 副理事長 이외의 理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한다.

第9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は 公團의 會計 및 業務를 監査한다.

第10條 (理事會) ①公團의 重要事項을 決定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副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議長은 可否 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

다.

⑥監事は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11條 (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第12條 (出捐金) ①政府는 公團의 設立·施設 및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에 充當하게 하기 爲하여 公團에 出捐金을 交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의 交付 사용 및 管理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政府는 公團의 建設 및 運營을 爲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團에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第14條 (事業計劃等の 承認) 公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 (事業年度) 公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6條 (決算書의 提出) 公團은 每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7條 (檢定手數料等の 徵收) 公團은 第6條 第1項 第1號의 技術資格檢定을 받는者로부터 國家技術資格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檢定手數料 기타 實費를 徵收할 수 있다.

第18條 (監督) 科學技術處長官은 公團을 監督한다.

第19條 (秘密嚴守의 義務) ①公團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자는 該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洩漏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團의 委託를 받아 技術資格檢定試驗問題의 作成 또는 出題를 한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20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關하여 該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

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 (罰則) 第6條 第1項 第1號의 技術 資格檢定에 應試한 者가 그 檢定에 關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때에는 當해 檢定을 停止 또는 無效로 하고 3年間 이 法에 의한 檢定에 應試 할 수 있는 資格을 停止한다.

第22條 (罰則) ①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壹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條 (罰則 適用의 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科學技術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月內에 5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公團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當時의 公團의 理事長 및 副理事長 이외의 理事는 第8條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科學技術處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設立登記를 完後 遲滯없이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 科學技術者倫理要綱

現代的 國家發展에 미치는 科學技術者의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우리들의 行動의 指針이 될 倫理要綱을 아래와 같이 制定하고, 힘써 이를 지킴으로서 祖國의 近代化에 이바지할 것을 명심한다.

1.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모든 일을 最大限으로 誠實하고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2.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恒常 專門家로서의 權威를 維持하도록 努力하며, 自己가 所屬하는 職場 또는 團體의 名譽를 昂揚하여야 한다.
3.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法律과 公共福祉에 反하는 어떠한 職分에서 從事하여서는 안되며, 의아스러운 企業體에 自己의 名稱을 빌려주는 것을 拒絕하여야 한다.
4.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依賴이나 僱傭主로부터 取得 또는 그로 因해 얻어진 科學資料나 情報에 對하여서는 秘密를 지켜야 한다. 또한 他人의 資料情報를 引用할 때는 그 出處를 밝혀야 한다.
5.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誇張 및 無根한 發言과 非權威的 또 眩惑的 宣傳을 삼가하며, 또 이를 制止하여야 한다.

특히 他人의 利害에 關係되는 評價·報告 및 證言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

6.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어떠한 研究가 그 依賴者에게 利益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報酬를 위한 研究도 擔當하지 않는다.
7.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祖國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限으로 奉仕精神을 發揮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應分의 物質的 協助를 아껴서는 안된다.